

#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- 제4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7. 1 . 12.  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평생 학습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정이유

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3조)
- 나.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둠(안 제3조)
- 다. 평생학습 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, 학계, 법조계, 사회단체, 평생교육관련 단체장, 시청 및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(안 제6조)
- 라.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제공 및 평생학습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사천시에 사천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 · 운영함(안 제10조)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- 나. 예산조치 : 수시 필요시 예산 요구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06. 11. 29 ~2006. 12. 18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##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(이하 “시”이라 한다)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①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노력한다.

②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.

③시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.

제3조(평생학습경비의 지원)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제2장 사천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

제4조(평생학습추진위원회 설치)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소속하에 사천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2.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

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회 위원은 시의원, 학계, 법조계, 사회단체, 평생교육관련 단체장, 시청 및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직원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7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 등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
3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사천시 평생학습센터

제10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)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제공 및 평생학습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사천시 평생학습센터(이하“평생학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11조(기능)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2.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
3.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4.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

5.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2조(운영)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결정으로 민간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시에는 운영비용, 운영조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과 수탁기관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제13조(운영요원)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14조(감독)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직원으로부터 하역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 발췌

## 【평생교육법】

제9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, 평생교육사의 양성,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제13조 (평생교육센터등의 운영)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,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01.1.29>

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·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01.1.29>

③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,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등을 활용할 수 있다.